

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3-2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(주)00000000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◎◎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

2. 조치내용

- (주)00000000
 - 과징금 258.3백만원
 - 감사인지정 2년
 - 前담당임원 ◇◇◇ 해임권고 상당
 - 업무정보송부(회사, 前담당임원 ◇◇◇)
- 前대표이사 ☆☆☆
 - 과징금 25.8백만원
- 前담당임원 ◇◇◇
 - 과징금 25.8백만원
- ◎◎회계법인
 - 경고
- 공인회계사 △△△
 - 경고
 - 직무연수 6시간
- 공인회계사 ▲▲▲
 - 경고
 - 직무연수 2시간
- 공인회계사 ◆◆◆

- 주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(주)00000000 >

○ 미수금 허위계상 등

- 회사는 임직원 명의 차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계상 하였고, 허위로 작성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

○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

- 회사는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자산,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함

○ 수입보증금 과소계상

- 회사는 신문 판매지국 보증금 등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의무가 있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를 일부 누락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 함

< ◎◎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○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판단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6조 등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29조, 제35조 등
-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, 제27조 등